

성남 도시관리계획(분당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성남 도시관리계획(분당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2025. 11. 3.

성 남 시 장

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한 사항

1)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)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나) 분당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- (1)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- (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- (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- (4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■ 공공건축물 : 변경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문화 시설2	문화 시설2	용도	기정
		변경	· 노유자시설(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) ·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[제1종근린생활시설(고령친화제품 소매점)] ·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자목[제2종근린생활시설(구내식당운영에 따른 일반음식점)]

(5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(6)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(7)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: 변경 (미변경 사항은 생략)

■ 공공건축물 : 변경

기 정
제1절 대지에 관한 사항 제101조 (건축물의 용도) 제4편 공공건축물 제1절 대지에 관한 사항 제101조 (건축물의용도) ⑤ 도서관용지 · 보건소용지는 66㎡ 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[제1종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 등)]을 사용할 수 있으며, 문화시설2(야탑동221)용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자목[제2종근린생활시설(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일반음식점)]과 50㎡ 이하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[제1종근린생활시설(고령친화제품 소매점)], 165㎡ 이하의 노유자시설(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)을 사용할 수 있다.
변 경
제1절 대지에 관한 사항 제101조 (건축물의 용도) 제4편 공공건축물 제1절 대지에 관한 사항 제101조 (건축물의용도) ⑤ 도서관용지 · 보건소용지는 66㎡ 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[제1종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 등)]을 사용할 수 있으며, 문화시설2(야탑동221)용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[제1종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)], 제4호 자목[제2종근린생활시설(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일반음식점)], 50㎡ 이하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[제1종근린생활시설(고령친화제품 소매점)], 165㎡ 이하의 노유자시설(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)을 사용할 수 있다.

□ 지형도면 고시도: 도면게재 생략